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4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3. 24.
판 결 선 고	2017. 4. 2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0 내지 13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별지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내역 기재와 같은 [redacted]구 B 대 11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2003. 2. 28.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은 장남인 원고, 차남인 D을 포함하여 총 12명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인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경 2015년 1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5.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과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들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상속인의 차남인 D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고지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D의 주소지인 [redacted]구 E, 201호로 송달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2012. 9. 10.부터 2015. 5. 31.까지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기도 하였다.

②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송달장소, 발송연월일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반면에 원고는 D의 주소지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안산시 상록구 F에서 거주하고 있고, 2015. 7.경 2015년 1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교부받은 것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그 직후인 2015. 7. 15. 위 2015년 1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의 신빙성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0 내지 13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제2항은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 및 내용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으므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인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임에도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62조 제2항이 신고의 주체, 기간, 방식까지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D이 2012. 9. 10.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해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위 기간 동안 일부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상당의 소유권을 포괄 승계하였고,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인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려면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따금 전입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1]가 전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D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거나[2],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6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재산세 납부의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0 내지 13 기재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상속인의 유언,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나 상속재산분할재판 결과 등
2) 원고는 이 법원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재산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상속포기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민법 제1019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권수아

판사 김지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순번	과세년월	과세구분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기일자	비고
				본세	도시계획세 도시지역분	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지방교육세	합계		
1	2012-10	2 수시분	원고	62,700	87,770	10,830	12,540	173,840	2012-11-30	2011년 9월(상속미신고)
2	2012-10	2 수시분	원고	62,700	87,770	10,830	12,540	173,840	2012-11-30	2011년 7월(상속미신고)
3	2012-10	2 수시분	원고	64,490	90,290	10,960	12,890	178,630	2012-11-30	2012년 9월(상속미신고)
4	2012-10	2 수시분	원고	64,490	90,290	10,960	12,890	178,630	2012-11-30	2012년 7월(상속미신고)
5	2012-10	2 수시분	원고	123,000	169,500	20,750	24,600	337,850	2012-11-30	2010년 7,9월(상속미신고)
6	2013-07	1 정기분	원고	66,000	92,390	10,640	13,200	182,230	2013-08-31	
7	2013-09	1 정기분	원고	66,000	92,390	10,640	13,200	182,230	2013-10-31	
8	2014-07	1 정기분	원고	69,300	97,010	11,310	13,860	191,480	2014-08-31	
9	2014-09	1 정기분	원고	69,300	97,010	11,310	13,860	191,480	2014-10-31	
10	2015-07	1 정기분	원고	71,690	100,370	11,200	14,330	197,590	2015-08-31	
11	2015-09	1 정기분	원고	71,690	100,370	11,200	14,330	197,590	2015-10-31	
12	2016-07	1 정기분	원고	74,400	104,150	11,140	14,880	204,570	2016-08-31	
13	2016-09	1 정기분	원고	74,400	104,150	11,140	14,880	204,570	2016-10-31	
합계				940,160	1,313,460	152,910	188,000	2,594,53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별지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내역

1. [redacted]구 B 대 112㎡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평스라브 지붕 주택1동

1층 21.18㎡(주차장)

1층 7.89㎡(창고)

1층 37.76㎡(다가구주택)

2층 66.83㎡(다가구주택)

3층 67.18㎡(다가구주택)

옥탑 8.28㎡. 끝.